

제1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2005.11.21(월)11:00

'05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변경안(수정안)

# 검 토 보 고 서

고제보건지소 신축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 '05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수정안)

## 1. 검토경과

가. 수정안 제출일자 : 2005. 11. 16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05. 11. 16

라. 의안번호 : 제2005 - 62호

※당초안 상정일 : 2005. 6. 16

## 2. 수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가. 수정안 제안이유

○ 현 고제보건지소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주민편익 제고를 위하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동 위치는 주민들의 접근조건이 불리하고 주차공간도 지나치게 협소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정위치를 재검토하라는 위원회의 요구사항에 의거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를 재선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

### 나.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77조, 제82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89조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 다. 주요골자

### ○ 당초안

구분	소재지	물건	수량 (㎡)	예정금액 (백만원)	비 고
취득	고제면 농산리 200-19	건 물	339.12 (1층259)	552,637	철콘스라브조(2층)

### ○ 수정안

구분	소재지	물건	수량 (㎡)	예정금액 (백만원)	비 고
계				<b>573,565</b>	
건물	고제면 농산리 754-1외	철콘스라브	339	<b>552,637</b>	철콘스라브조(2층)
토지	3필지		1,126 (341평)	<b>20,928</b>	공시지가 기준표시
	고제면 농산리 754-1	답	872	11,336	
	754-4	답	234	9,032	
	1855-2	대지	20	560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현재 고제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득하기 위하여 2005년도 제1차 정례회(2005.6.16) 심의과정에서 신축하려는 보건지소의 현 위치가 면적이 협소하고 접근조건이 불리하여 위원회에서는 적정한 위치를 재선정 요구 하면서 심의를 보류한 안전임.

○ 변경된 위치는 면사무소 및 도로와 접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토지형상이 양호하며, 평탄한 것으로 보건지소 부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그러나 고제보건지소를 현 위치에 신축할 경우에는 기 확보된 예산 552,637천 원으로 건립가능하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부지 매입을 위하여는 약7천만 원 정도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이는 전액 군비로 부담하여야 할 것임.

- 수정안에 표시된 예정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임.

○ 건물준공 후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처분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않은 것으로 군에서 잡종재산으로 방치할 경우 건물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므로 처분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동 대상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보건지소 신축에는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고제보건지소 신축사업은 당초 부지의 적정성에 대하여 사전 검토 없이 제출함에 따라 부지재선정을 위하여 5개월 이상 건축이 지연되어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 하였는바, 향후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를 신축할 경우에는 사전 해당지역 의원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4. 참고자료

### □ 지방재정법

#### ○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지방재정법시행령

#### ○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95·5·16, 96·4·27, 98·7·16, 2000·10·20, 2002·11·29>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